

바람직한 공정경쟁 규제정책방향

노 대 전

한국통신 기획조정실 부장

정보통신부문의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수요의 다양화·고도화로 인하여 과거에 인정되던 정보통신의 자연독점성이 무너지면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에 기인한 정보통신산업의 규제논리는 점차 그 타당성을 잃어가는 반면 WTO체제의 출범으로 나타난 규제의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각국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세계공통의 규범에 적응하는가가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공정경쟁 규제방향도 이제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 세계와 공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소비자의 후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일관성 있는 규제원칙 및 기준 설정

우리 나라의 경우 정보통신산업의 규제 측면에서 관련법령의 미비나 중복규제로 원칙과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몇 차례의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규제의 일관성 및 원칙 부재는 WTO

체제하의 개방경제하에서는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관계자들의 정책에측력을 저하시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새로운 규제사안이 발생할 경우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을 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나 영국의 규제기관들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 하는 경우에 몇 차례에 걸쳐 자문문서를 발표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해 나가는 투명한 규제절차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

개방체제하에서의 정보통신 규제정책은 과거보다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정책의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의 분리, 그리고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설치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미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책부서와는 독립된 규제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조직의 기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보통신정책을 결정·집행하

는 정보통신부와의 관계에서 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책과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규제 위주의 기능만을 발휘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규제권한을 행사한 경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또 다른 규제를 부과하게 되어 규제의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WTO 기본통신협상의 타결로 해외의 많은 사업자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될 것이고 이들에 대한 규제는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규제방식도 점차적으로 사전적 규제에서 탈피하여 사후적인 규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함으로써 독립적인 지위와 기능을 갖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3) 규제상의 형평성 확보

국내통신사업은 “대외개방”과 “IMF 체제”라는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하에 처해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경쟁 시대에 걸맞는 규제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경쟁정책의 기초를 신규사업자 조기 육성정책으로부터 국제경쟁력 강화정책으로의 일대 전환과 더불어,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장치를 속히 해제하여 지배적사업자가 빠른 시일내에 글로벌화한 세계 선진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하루 빨리 갖추어야 한다. 비대칭적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정책적 보호에 의한 신규사

업자 육성정책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외국사업자의 진입시 동등대우 보장요구 등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4) 정보통신 규제기능의 통합

최근 컴퓨터·통신·방송의 융합화 현상이 급진되고 있어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규제에서도 관련업무의 종합화·체계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나, 정보통신산업의 규제관련 업무가 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로 분산 및 중복되어 있어 규제의 일관성을 어렵게 함은 물론 규제대상자들에게는 관련비용을 증폭시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통신과 방송을 일원적으로 관할하는 독립규제기관이 자국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FCC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국제정산요금의 벤치마크 결정, 외자계 지배적사업자의 사업규제 등에서 명백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통해 미국 정부는 외국 사업자들의 부당행위를 매우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 자국의 통신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정보통신산업의 정책기능은 물론, 규제업무도 일원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5) 영역간 진입규제의 완화 및 폐지

이미 선진국들은 다양한 뉴미디어의 출현과 통신·방송의 융합 등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정

보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식화된 정보통신서비스간의 영역을 폐지하여 각 분야로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으로서 1996년 통신법의 개정을 통하여 통신, 방송, CATV, 뉴미디어 등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일본 또한 기존의 엄격한 국내와 국제, 제1종과 제2종 사업의 구분이 1997년 6월의 전기통신사업법, NTT법, KDD법 등의 개정으로 사업간 영역구분이 완화되면서 기존 사업자간 다양한 형태의 업무제휴 및 합병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제휴와 합병에 의한 기존 영역간의 원활한 진입은 소비자들에게 일체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자들의 설비와 영업력 등을 공유할 수 있어 정보통신업체들의 신속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동향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서비스는 통신과 방송, 그리고 통신 서비스에 있어서도 유선과 무선 등 각 서비스별로 사업자가 허가되고 있어 서비스 영역간의 자유로운 진입이 곤란한 상태이다. 이러한 인위적인 사업 영역의 구별은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에는

물론 다양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6) 요금규제 제도의 개편

선진국은 상호접속요금 및 사용자요금과 같은 요금제도를 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상호접속에서는 원가에 기초한 요금제도를 확립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영국의 Price-Cap 규제제도, 국제정산에서는 자국 사업자의 지불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벤치마크를 설정한 미국 FCC의 결정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요금규제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모든 형태의 요금은 비용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최종 소비자의 효용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행 우리 나라의 요금제도는 원가에 근거하지 못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므로 통신요금이 새로운 경쟁촉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제도가 국민 각계각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공정거래협회는 공정거래 전문지인 월간 「공정경쟁」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쟁」지는 공정경쟁 사회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과 토론하고자 합니다. 참신하고 의욕적인 여러분의 글을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보 낼 곳 : (100-74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의회관 621호
사단법인 한국공정거래협회
「공정경쟁」 출판담당자 앞
전 화 : (02)775-8870~2
E·mail : kfca2000@netsgo.com(인터넷),
kfca2000(천리안)